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용술 의원 발의]

의안번호	2667
------	------

발의일자 : 2025. 1. 23.

발 의 자 : 김용술 의원

찬 성 자 : 고영찬 의원

정재동 의원

1. 제안이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24.11.1.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

나.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안 제4조, 안 제5조).

라.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등, 보험가입 및 예산지원 등(안 제6조 ~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 조치

다. 기 타

1) 현행 조례: 별도 첨부

2)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3) 입법예고: 2025. 2. 4. ~ 2.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 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3. “노인 사회활동”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

4. “노인 사회활동 지원”이란 노인에게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 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 일자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등)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생산품의 판매·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시회, 박람회, 홍보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그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08.] [(제정) 2015.10.08. 조례 제83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지역봉사 활동과 일자리 창출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이라 함은 노인의 지역 봉사활동을 넓히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사회활동 사업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사회활동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사회활동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법인이나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등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830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노인일자리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14호, 2023. 10. 31., 제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상담 및 교육, 정보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기관, 또는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노인생산품”이라 한다)의 판매·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박람회, 홍보행사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참여자 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